



#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21년 5월호

## Contents

### 회계정보

-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여부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 안내

### 세무 및 법률정보

- 'K-반도체 전략' 중 세제지원 내용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10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의 한국 Member Firm입니다.]

한울회계법인의 뉴스레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 연락처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mailto: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http://www.crowe.kr)

####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여부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 안내

■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여부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2021.5.6]

요약

I. 요약

□ 금융감독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실태의 점검결과 및 향후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 (점검결과) 2018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실태 점검 결과 총 28건(19개 회사, 대표자·감사 각 1인, 7개 회계법인)의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이 중 13건(회사5, 대표자1, 감사인7)에 대해 300~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회사) 위반회사(19사) 대부분(18사)이 비상장법인으로 관리인력 부족, 법규인식 미흡 등의 이유로 의무 불이행

- 폐업·회생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는 소규모·한계기업이 11사이며, 외부감사 결과 의견거절 기업은 13사에 달함

◦ (대표자/감사) ①대표자는 관련 법규 숙지 미흡으로, ②감사는 운영실태평가보고 과정 문서화 및 이사회 대면보고 의무 미숙지 등으로 위반

◦ (감사인) 회계법인(7사)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가 불필요한 것으로 오인하는 등의 이유로 위반

◆ (평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 회사가 전년대비 감소(36사→19사, 47.2%↓)하였는바, 동 제도가 점차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유의사항) 新외감법 시행으로 동 제도의 운영·검증절차 등이 강화되었는바, 회사·감사인 관련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고 충실히 이행할 필요

◦ ①회사는 CEO의 운영실태 보고, 감사의 운영실태 평가보고 절차가 이행되도록 유의해야 하고, ②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거절의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의견을 반드시 표명하여야 함

개요

II.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

□ (정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지칭\*(외감법 제8조 제1항)

\*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 (목적) 회사는 구비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법규준수 여부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도록 하여,

◦ 회사가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 (적용대상) 주권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사항(외감법 제 8 조) >

| 구분               | 내용  |
|------------------|---|
| 회사               |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마련하고, 상근이사 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               |
| 대표자<br>(내부회계관리자) |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                             |
| 감사<br>(감사위원회)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를 이사회에 매 사업연도마다 대면 보고하고,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 |
| 감사인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감사(상장법인)·검토(비상장법인)하고 그 결과를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으로 표명          |

□ (법규위반시 제재) 증권선물위원회는 관련 법규를 위반한 회사, 대표자, 감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외감법 제47조 제2항)

점검결과

III. 점검결과 분석

□ (총괄) 주권상장법인 및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2018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 총 28건(19개 회사, 대표자·감사 각 1인, 7개 회계법인)의 위반사례가 발견되었고, 이 중 13건(회사 5사, 대표자 1인, 감사인 7사)에 대하여 증선위('21.4.21.)에서 300~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외감법시행령 별표2 및 외감규정 별표9 「과태료부과기준」('붙임1' 참조)

◦ 2016~2017회계연도의 연평균 위반건수가 약 45건 수준인 것에 비해 37.8% 감소하였으며, 특히 회사의 내부회계 미구축 건수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47.2% ↓)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위반회사 점검 결과

(단위: 사, 명)

| 회계연도 | 내부회계 미구축 |         | 내부회계 미보고 |         | 검토의견 미표명 |         | 위반 합계 |         |
|------|----------|---------|----------|---------|----------|---------|-------|---------|
|      | 회사       | 과태료 면제* | 대표자 등    | 과태료 면제* | 감사인      | 과태료 면제* |       | 과태료 면제* |
| 2016 | 35       | 28      | 2        | 1       | 10       | 3       | 47    | 32      |
| 2017 | 36       | 33      | 2        | -       | 4        | 4       | 42    | 37      |
| 2018 | 19       | 14      | 2        | 1       | 7        | -       | 28    | 15      |
| 계    | 90       | 75      | 6        | 2       | 21       | 7       | 117   | 84      |

\* 회생절차, 폐업, 임직원수 5인 이하 등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1.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 위반

□ (회사유형별) 위반회사(19 사) 중 주권상장법인은 1 사(코스닥 상장)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비상장법인(18 사)

◦ 주권상장법인은 코스닥 상장 법인 1 개사(익년초 회생절차 진행)를 제외하고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구축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나,

- 비상장법인은 관리직 인력 부족, 법규인식 미흡, 열악한 재무 상태로 인한 감사의견거절 등으로 의무 위반이 다수 발생

□ (자산규모별) '18 년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 법인\*이나, 당기말 자산총액이 1,000 억원 미만으로 감소되어, 이후 연도는 구축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지속적으로 내부회계 관리를 할 유인이 없는 회사가 많았으며,

\* '17 년 자산총액 1,000 억원 이상

◦ 영업상태 역시 폐업하거나, 당기 혹은 익년 중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등의 소규모·한계기업(11 사)이 다수를 차지

- (감사의견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미구축한 회사의 당해연도 감사의견 거절은 13사로 대부분을 차지
  -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내부통제 이므로 내부회계관리가 부실할 경우 감사의견 형성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

- (과태료 부과) 위반회사 19 사 중 5 사에 대하여 각 300~600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면제사유\*) 임직원 5 인 이하의 영세기업이거나 기업회생,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과태료 면제
    - \* 외감법시행령 별표 2 및 외감규정 별표 9 「과태료부과기준」(붙임 1' 참조)

**2. (대표자·감사)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평가의무 위반**

- (보고/평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평가의무 위반은 2 건으로 단순 착오 등의 법규 인식 부족이 주요 원인
  - 특히, 감사는 新외감법 시행으로 운영실태평가결과를 문서화하고 주주총회 1 주전 이사회에 대면보고 하도록 의무를 강화하였음에도 종전 방식으로 보고
- (과태료 부과) 위반한 대표자 1 인에 대하여 300 만원의 과태료 부과

**3. (감사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검토의견 미표명**

- (회계법인 규모별) 위반 감사인 7 사 중 대형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은 없으며, 1 사는 중형회계법인, 6 사는 소형회계법인(감사반 포함)에 해당
  - ※ 공인회계사 600 인 이상 또는 감사대상 상장사 수 100 사 이상은 대형, 공인회계사 120 인 이상 또는 감사대상 상장사 수 30 사 이상은 중형, 그 외는 소형 회계법인으로 구분
- (감사의견별) 감사인 7 사의 위반과 관련된 11 개 피감사회사의 감사보고서는 적정의견이 5 건, 의견거절이 6 건임
  - 다수의 감사인이 단순 착오 혹은 '18 년도 감사의견거절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표명이 불필요한 것으로 오인하여 의무위반 발생
  - 또한 상기 11 사 중 1 사\*를 제외한 10 사는 회사 측의 의무 위반도 함께 지적되었음
    - \* 공시과정에서 감사인이 검토보고서 단순 누락
- (과태료 부과) 위반 감사인 7사에 대하여 각 300~1,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유의사항

IV. 유의사항

1. 新외감법상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숙지 필요

□ 회사의 대표자와 감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의무가 新외감법 시행에 따라 강화되었음

◦ (대표자)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상근이사 중 1 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주총·이사회·감사에게 내부회계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보고\*하여야 함

\* 新외감법 시행으로 주총보고가 추가되었으며, 이사회 및 감사에는 대면보고 필요

◦ (감사) 대표자로부터 보고받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정기총회 1 주전 이사회에 대면보고 하여야 함

\* 평가보고서는 작성 후 본점에 5 년간 비치하여야 함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등의 징구를 통해 감사의 의무 이행 점검이 가능해졌으므로, 평가보고서 공시를 하지 않는 비상장법인도 반드시 규정 준수에 유의할 필요

※ 보고의무 등을 위반한 대표자(또는 감사)에게는 3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新외감법상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 >

| 구분     | 舊 외감법                                   | 新 외감법('18.11.1. 시행)                           |
|--------|---|---|
| 조항     | 제2조의2~3                                 | 제8조   |
| 적용대상   | 상장법인 및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 상장법인 및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br>(유한회사, SPC 등 제외) |
| 보고주체   | 상근임원<br>(내부회계관리자)                       | 대표자<br>(내부회계관리자)                              |
| 보고대상   | 이사회, 감사(위원회)                            |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
| 감사의 책임 | 운영실태평가, 이사회 보고 등의 의무가 있으나 구체적인 절차 규정 없음 | 운영실태평가결과를 문서화하고 주주총회 1주전 이사회에 대면보고            |

**2.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 인증 강화**

- '19회계연도부터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검증이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되었으므로, 더욱 충실히 이행할 필요
    -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시행
- '19년(2 조원 이상)→'20년(5 천억원~2 조원)→'22년(1 천억원~5 천억원)→'23년(전체)

**3. 상장법인의 연결재무제표 회계정보 관련**

- 지배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하여야 함
    -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시행
- '22년(2 조원 이상)→'23년(5 천억원~2 조원)→'24년(전체)
- 상장지배회사는 국내외 종속회사를 포함한 연결회계정보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운영을 준비할 필요

**4. 감사인의 감사(검토) 의견 표명의무**

-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인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감사)의견을 표명해야 함
  -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않았더라도 감사인이 검토의견을 표명하는데 장애가 없으므로 과태료가 면제되지 않는 점에 유의할 필요

**5. 최종 공시여부 확인 필요**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및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필수공시서류\*의 공시누락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필요(내부회계관리제도 필수 공시서류 양식 및 사례 붙임 2 참조)
  - \*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①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②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③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을 첨부
  - 감사인 : 감사보고서에 ①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②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을 첨부

**6. 위법사실 재발 방지에 유의**

- 내부회계관리제도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20/100 이내에서 가중

7.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 인증 강화

□ 이사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관련자가 회계정보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조·변조·훼손 또는 파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회계정보 위·변조, 훼손 등의 행위는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상의 신고대상에 해당 (일정요건 충족시 포상금 지급)

붙임

(붙임1) 과태료 부과기준(외감규정 별표9 참조)

□ 과태료 부과 방법

◦ 법정최고금액에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표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예정금액을 산정하고, 가중·감경하여 최종 과태료부과금액을 결정

< 과태료 부과 산식 >

$$\boxed{\text{법정최고금액}} \times \text{예정비율} = \boxed{\text{예정금액}} \pm \text{가중감경 및조정} = \boxed{\text{과태료부과액}}$$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표 >

| 위반결과 \ 동기 | 상         | 중          | 하         |
|-----------|-----------|------------|-----------|
|           | 중대        | 기준금액의 100% | 기준금액의 80% |
| 보통        | 기준금액의 80% | 기준금액의 60%  | 기준금액의 40% |
| 경미        | 기준금액의 60% | 기준금액의 40%  | 기준금액의 20% |

※ 위반동기 판단기준

-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위반결과 판단기준

- (1) 중대 : 해당 위법행위가 언론에 공표되거나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되어 있어 회계정보의 투명성 및 신뢰성이 크게 훼손된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등을 의미
- (2)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3) 경미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등을 의미



□ 과태료 면제 사유

- (회생절차진행 등) 위반당시「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등 정상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과태료 면제 [과태료부과기준 6.나]
- (임직원수 5 명 이하) 위반당시 인력구조를 고려할 때 정상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관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과태료 면제 [과태료부과기준 6.나]
- (기타) 조치시 폐업, 청산, 파산 등 사실상 납부 능력이 없어 과태료 면제 [과태료부과기준 4.가]

**(붙임2) 내부회계관리제도 필수 공시서류 양식 및 사례**

I.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 : 사업보고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첨부

|   |                  |         |                     |
|---|------------------|---------|---------------------|
|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8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 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인력에 관한 사항 |                  |         |                     |
| <이하 생략>   |                  |         |                     |
|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가 보고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                  |         |                     |
| 보고일자  | 보고자              | 보고내용    | 보고대상                |
| 202x.3.17 (주주총회)<br>202x.1.28 (이사회)<br>202x.1.26(감사위원회)                     | 대표이사,<br>내부회계관리자 | <이하 생략> | 주주총회, 이사회,<br>감사위원회 |

※ 첨부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예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xx주식회사 주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귀중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xx년 xx월 xx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습니다.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중략)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고,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에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 검토하였습니다.

xx년 xx 월 xx 일

대표이사 (서명)

내부회계관리자 (서명)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8 조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

| 보고일자      | 보고자       | 보고내용    | 비고 |
|-----------|-----------|---------|----|
| 202x.1.28 | 감사위원회 위원장 | <이하 생략> |    |

※ 첨부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예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xx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본 감사(위원회)는 xx년 xx월 xx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으며 본 감사(위원회)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본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본 위원회에 제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참고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

(중략)

본 감사(위원회)의 의견으로는, xx년 xx월 xx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xx년 xx 월 xx 일

감사(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8 조제 6 항에 따른 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

(감사인명 : xx 회계법인)

| 구분                                     | 의견내용    | 회사의 개선여부 | 개선계획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8 조제 6 항의 종합의견 | <이하 생략> |          |      |
| 기타 내부회계제도 관련 의견                        |         |          |      |

※ 첨부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 (예시)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보고서**

xx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검토)의견

우리는 20xx년 xx월 xx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한 xx주식회사(이하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검토)하였습니다.

<이하 생략>

II. 감사인 : 감사보고서에 첨부

1.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 보고서 작성 및 회사 운영실태보고서 첨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또는 검토의견**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보고서는 xx주식회사의 xx년 xx월 xx일자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검토)한 결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첨부하는 것입니다.

- 첨부: 1.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보고서  
2.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보고서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보고서**

xx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검토)의견**

우리는 xx년 xx월 xx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한 xx주식회사(이하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검토)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xx년 xx월 xx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회사의 xx년 xx월 xx일 현재의 재무상

<이하 생략>

**※ 첨부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예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xx주식회사 주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귀중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xx년 xx월 xx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습니다.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중략)**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고,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에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 검토하였습니다.

xx년 xx 월 xx 일

대표이사 (서명)

내부회계관리자 (서명)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세무 및 법률정보 등

K-반도체 전략' 중  
세제지원 내용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의 R&D·시설투자에 대한 전방위적 세제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 1. 추진배경

- 4차 산업혁명 확산, 기술 패권경쟁 가속화 등에 따라 핵심기술의 중요성 부상
- ⇒ 국가경제 차원에서 글로벌 경쟁우위를 선점해야 하는 국가기간산업의 핵심전략기술을 선별하여 지원 강화 필요
- 특히, 반도체 분야는 핵심 주력산업으로서 디지털 경제 전환, 기술경쟁 심화 등으로 중요성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
- ⇒ 우리 반도체 산업이 세계 최고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경쟁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선제적 투자를 적극적으로 세제 측면에서 지원

### 2. 제도현황

- 현재 기업의 R&D 및 시설투자에 대해 일반 투자,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2단계 구조로 세제지원
- 신성장·원천기술\*과 관련된 R&D 및 시설투자 시 각각 일반 R&D 및 시설투자 대비 공제율 우대 적용

\* (R&D, 반도체 부문 20개) 12nm 이하 D램, 220단 이상 낸드 설계·제조기술 등  
(시설, 반도체 부문 15개) 7nm 이하 파운드리, 14nm 이하 D램 및 170단 낸드 장비·장비부품 제조시설 등

#### <현행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 ① R&D 비용(%) | 대     | 중견 | 중소    |
|-------------|-------|----|-------|
| 일 반         | 2     | 8  | 25    |
| 신성장원천기술     | 20~30 |    | 30~40 |

| ② 시설투자(%) | 당기분 |    |    | 증기분 |
|-----------|-----|----|----|-----|
|           | 대   | 중견 | 중소 |     |
| 일 반       | 1   | 3  | 10 | 3   |
| 신성장원천기술   | 3   | 5  | 12 |     |

**3. 세제지원 강화 방안**

-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 양산시설 확충 촉진을 위해 3번째 단계로서 (가칭)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신설

\*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과 관련된 기술로서, 글로벌 경쟁우위를 선점·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핵심기술

○ (지원내용)(가칭) 핵심전략기술의 R&D 및 시설투자에 대해 현행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보다 공제율 대폭 확대

- (R&D비용) 신성장·원천기술보다 공제율을 10%p 상향하여 최대 50%(대기업 최대 40%)로 지원
- (시설투자) 공제율을 일반 시설투자 대비 5~6%p,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3~4%p 상향하여 지원 확대\*

\* 투자증가분 추가공제를 포함한 최대공제율은 10%(대기업)~20%(중소기업)로 과거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유사한 수준

→ 상용화 전 양산시설을 (가칭)핵심전략기술 시설투자에 포함하여 지원 실효성 제고

| ① R&D 비용(%) | 대     |    |       | ② 시설투자(%) | 당기분 |    |    | 증가분 |
|-------------|-------|----|-------|-----------|-----|----|----|-----|
|             | 대     | 중견 | 중소    |           | 대   | 중견 | 중소 |     |
| 일반          | 2     | 8  | 25    | 일반        | 1   | 3  | 10 | 3   |
| 신성장·원천기술    | 20~30 |    | 30~40 | 신성장·원천기술  | 3   | 5  | 12 |     |
| 핵심전략기술      | 30~40 |    | 40~50 | 핵심전략기술    | 6   | 8  | 16 | 4   |

⇒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 강화(중소기업 R&D 비용 최대 50%, 시설투자 최대 20%)

○ (지원기간) 투자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3년 간 한시 적용('21년 하반기 ~ '24년 투자분)

- '21년 하반기 투자분부터 신속 적용하여 조기투자 확충 지원

**4. 추진계획**

- 동 세제지원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금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여 9월 정기국회에 제출

- (가칭)핵심전략기술의 구체적인 범위는 관계부처, 관련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선정\*

\* 반도체 등 국가경제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 중 글로벌 경쟁우위 선점·유지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엄격하게 선별

최신 세무예규  
판례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네덜란드 법인에게 선박용 탱크컨테이너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서면국제세원 2021-1348, 2021.05.13)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국제물류주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화주의 요청에 따라 선박 및 탱크컨테이너 등을 임차하여 화주의 물품을 국외 요청지까지 운송해 주는 업체임
- 질의법인은 운송업을 위한 '선박용 ISO Tank Container(국제표준화기구의 인증을 받은 액상화물 등의 물질을 운반하는 탱크컨테이너)'를 국내 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소재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컨테이너 사용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예정임

(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에게 선박용 탱크컨테이너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회신)

선박용 탱크컨테이너 임대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에 탱크컨테이너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소득은 「법인세법」 제98조의7에 따라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세율(10%, 주민세 포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1. 일방국에서 발생하고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그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나) 3항 세항 (나)에 규정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3.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나)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법령해석부가 2021-80 (2021.04.29))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금융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 '20.10.30. 매도 법인이 과세사업(호텔업)에 사용하던 건축물(이하 "쟁점건물") 및 토지를 00,000백만원\*에 매입하였고,

\* 토지 00,000백만원, 건물 0,000백만원 부가세 000백만원

- 매입 당시 쟁점건물 전체를 직접 사용할 목적은 아니었으며, 최소 1~2년 후 철거하여 \*\*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한 후 \*개 층은 본점 사무실로, 나머지는 임대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나

- 현재까지도 쟁점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며, 구체적인 신축계획 수립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다만, 나라장터에 설계 공고하여 선정된 건축사로부터 설계용역을 공급받고 있으며, 현재는 지질조사 및 계획설계가 진행중임

- 질의법인은 쟁점건물 소재지에 별도의 지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으며, 쟁점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

(질의내용)

- 금융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취득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2호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건물을 취득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한 경우로서 철거한 건물의 취득가액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 후 과세사업 사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업 무 소 개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li> <li>▪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li> <li>▪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li> <li>▪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li> <li>▪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li> <li>▪ 조직, 인사 전략 / HR</li> <li>▪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li> <li>▪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li> <li>▪ M&amp;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li> <li>▪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li> <li>▪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li> <li>▪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li> <li>▪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li> <li>▪ PI / CRM / Risk Management 등</li> </ul> |
|--|---|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kr](mailto:secretary@crowe.kr)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i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